

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사유

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되고 「하수도법」과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 제정(2006. 9. 27), 시행(2007. 9.28)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함

2. 관련법령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

3. 주요골자

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정함(안 제2조)

4. 검토의견

본 조례 제정 건은

-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축류 및 가금류 등에 대하여 사육장소의 제한적 지정은 시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며

- 세계도처에서 광우병, 조류독감 등 희귀병원충이 창궐하여 국민의 생명에 위해요인이 되고 있는 작금의 실정을 파악,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피해의 최소화와 재난예방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며
- 중구 등 14개 구·군에서 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동구에서는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
- 특히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의 장소제한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 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
위 조례 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

2008. 6. 19

도시전문위원 정 금 배